

의안번호	제 391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21 일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9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안연월일: 2012년 9월 21일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조직신설(실·국)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개정(안 제3조제2항)
 -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신설) ⇒ 행정문화위원회
 - 혁신도시관리본부(신설) ⇒ 건설소방위원회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복지위원회

가.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행정문화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 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5. 건설소방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행정문화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 환경국, <u>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u>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4. (현행과 같음)</p> <p>5. 건설소방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u>혁신도시관리본부</u>,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6.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